

대구예술대학교 석암미술관 대관 약관

(제정 2010.12.08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(개정 2024.05.16. 교무위원회)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약관은 석암미술관의 전시장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, 석암미술관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약관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시장 운영과 문화예술 창달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① 대관이라 함은 전시나 관련 부대행사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 대관자는 석암미술관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② 석암미술관은 대관시설, 설비의 관리유지, 입장통제,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.

제 2 장 대관절차

제4조 (대관신청) ① 시설, 설비를 대관받고자 하는 자(이하 '신청인'이라 한다)는 대관심사를 위해 전시장 대관신청서와 함께 포트폴리오(또는 과거 전시도록), 전시계획서 각 1부를 석암미술관에 제출해야 한다. 단,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제5조 (대관기간) ① 대관기간은 작품설치를 위한 준비와 작품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7일이며,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대관기간동안 작품 설치는 전시개막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며, 작품철수는 전시 마지막 날 오후 2시까지 완료해야 한다.

제6조 (대관승인) ① 석암미술관은 대관신청 마감 후 15일 이내에 이를 엄격히 심사한 후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.

② 석암미술관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 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대관 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지정한 일자(통보 후 10일 이내)까지 석암미술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승인된 전시라도 지정한 일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전시는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
제7조 (대관승인의 기준) ① 대관승인 기준은 석암미술관이 전시장 운영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② 석암미술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.

1.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
2. 석암미술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
3.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 또는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

4.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
③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석암미술관은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대관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.

1.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

2. 약관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

3. 약관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

4. 약관을 위반하여 대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제 3 장 대관료

제8조 (대관료 구성 및 결정) ① 대관료는 전시실 사용료 및 전시 시설의 기본 조명료로 구성된다.

② 대관료는 시설유지비, 감가상각비, 인건비 등 원가 요인을 고려하여 석암미술관이 정한다.

제9조 (대관료 납부) 대관료는 1일 외부인 전시 15만원, 우리 대학교 졸업전시 및 우리 대학교와 관련된 전시 10만원으로 정하며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한다. 단, 초대 전시는 무료로 한다.

① 계약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, 계약금은 대관료 총액의 30%이다. 단, 특별한 경우 석암미술관은 계약금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잔금은 전시 개막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 지정된 일자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석암미술관은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 전시기간 중 추가로 부대 설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석암미술관에 사용허가를 얻은 후 대금을 즉시 납부하여 사용한다.

제 4 장 전시진행

제10조 (전시진행의 정의) 전시진행이라 함은 전시, 준비기간 및 작품반출 기간을 포함한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전시와 관련된 진행 제반 사항을 말한다.

제11조 (사전협의 및 전시진행 협조) ① 시설 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자는 물론 설치제작가가 필히 참석, 설치방안 등 제반사항을 석암미술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석암미술관은 검토 결과 전시장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.

② 대관자는 전시 외적인 목적의 별도 부대행사(정치, 특정종교행사, 상품판매행위 등)는 할 수 없다.

③ 대관자는 전시장의 조명 등 설비의 위치변경, 제거 또는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석

암미술관과 사전 협의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대관자는 전시장 및 작품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대관자의 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12조 (전시장 폐쇄시간) ① 전시장 폐쇄시간은 하절기(3월~11월)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, 동절기(12월~2월)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, 주말과 공휴일은 절기에 상관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.

제13조 (광고, 홍보물의 협의) ① 대관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, 홍보물 제작시 석암미술관에 관련된 사항은 석암의 CIP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전시 홍보용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, 포스터 등 기타 홍보물은 지정 게시판에만 부착하여야 한다.

제14조 (방송, 판촉, 부대행사 등) ① 석암미술관에서 행해지는 전시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전시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석암미술관과 사전 협의,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부대행사(세미나, 퍼포먼스, 판촉, 사인회 등)는 전시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,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석암미술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대관자는 전시장에서 전시작품, 행사응용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 상품을 전시할 수 없다. 다만, 대관 신청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전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 5 장 유의사항

제15조 (대관취소) ① 대관을 통보한 후 지정된 일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, 잔금을 전시 개막일 7일 이전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금지된 사항 및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석암미술관은 대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는다.

②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장 사용 1달 전에 석암미술관에 통보해야 한다.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한다.

1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2. 석암미술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제16조 (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)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 단,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,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시는 석암미술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제17조 (사용내용 변경금지) 대관자는 전시내용, 작가구성 등을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. 다만, 대관자측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석암미술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석암미술관은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는다.

제18조 (대관일정 변경금지)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신청하여 석암미술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및 석암미술관

사정에 의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19조 (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) ① 대관자는 전시, 부대행사 등을 위해 부스 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석암미술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위 ①호에 의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,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.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석암미술관의 기존 시설물,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.

③ 석암미술관은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,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,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.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석암미술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④ 석암미술관은 위 ②호 및 ③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관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⑤ 대관자는 전시장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.

⑥ 대관자는 전시장내 화환진열을 삼가해 주기 바라며,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진열할 경우에는 대관기간 종료 전에 화환의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.

⑦ 개막식 및 각종 행사시 전시장내에 조리음식을 반입할 경우 사전에 석암미술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단, 간단한 다과는 허용한다.

제20조 (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)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석암미술관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,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②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.

③ 대관자는 석암미술관이 정하는 전시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.

④ 석암미술관은 대관기간 중 전시와 관련하여 석암미술관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,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⑤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작품,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.

제 6 장 보칙

제21조 (소정양식)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석암미술관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.

제22조 (약관의 효력) 본 약관은 석암미술관과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

제23조 (약관변경 승인 등)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석암미술관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,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석암미술관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.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24조 (관할법원) 이 약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관할법원은 석암미술관 소재지

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25조 (약관위반시의 책임)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,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